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 및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(전화 440-4623), 서구청 도시개발과(전화 560-4762)에 갖추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6. 7. 4.

인 천 광 역 시 장

1. 결정취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에 관한 계획

2. 위 치: 서구 석남동 653-3번지 일원



3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	면 적(m²)			구성비 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	79,278	-	79,278	100.0	
공업 지역	소 계	-	79,278	79,278	100.0	
	일반공업지역	-	79,278	79,278	100.0	
녹지 지역	소 계	79,278	감) 79,278	-	-	
	자연녹지지역	79,278	감) 79,278	-	-	

■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위 치	용도지역		면 적 (m²)	용적률	결정(변경)사유
		기 정	변 경			
①	서구 석남동 653-3번지 일원	자연녹지지역	일반공업지역	79,278	350%	○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공업지역 위치 변경

4. 지형도면: 별첨(갖추어둔 장소의 지형도면으로 같음: 시보게재 생략)

